

1998. 12.17

1998年度 第3回 忠清北道 追加更正豫算案

檢 討 報 告 書

(福祉環境局 所管)

教育社會委員會 專門委員

豫算案 主要内譯

가. 일반회계

□ 복지환경국소관

1998년도 제3회 충청북도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
1,428억 8,448만원으로
도분청 일반회계 대비 15.1%를 점유하고 있으며,
기정예산액 대비 5.3%인 71억 4,988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
도분청 일반회계 예산안은
기정예산액 대비 4.7%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

□ 주요내역은

국비보조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와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을
증감 조정한 것으로

-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119만 1천원 감액 (국, 도)
- 농어촌보건소 한방진료실 증개축 920만원 감액 (국)
-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억 6,550만원 전액 감액 (국, 교)
- 건강증진 사업비 (성립전) 2,320만원 신규계상 (기)

-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(성립전) 19억 900만원 증액 (국)
- 특별대책지역합병정화조 설치사업 1억 8,037만 5천원 증액 (국, 도)
- 하수종말처리장사업 (성립전) 68억 7,200만원 증액 (양)

- 장애인복지관 운영 3,982만 4천원 감액 (국, 도)
- 장애인재활시설 운영비 6,020만원 증액 (국, 도)
- 장애인시설 수용보호비 2억 8,843만 1천원 감액 (국, 도)

-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3억 2,298만 7천원 감액 (국, 도)
- 장애인자녀교육비 지원 625만원 감액 (국, 도)
- 장애인의료비 지원 2,646만원 증액 (국, 도)
-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,507만 6천원 감액 (국, 도)

-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335만 5천원 감액 (국)
-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1,500만원 신규계상 (기)
- 부랑인시설 수용보호비 1억 298만 5천원 증액 (국, 도)
- 정신질환자요양시설 보호비 3억 7,985만원 감액 (국, 도)
-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(성립전) 3억 258만 9천원 증액 (국, 도)

-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1억 781만 4천원 감액 (국, 도)
-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3억 7,494만 9천원 증액 (국, 도)
-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2,962만 7천원 증액 (국)
-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(성립전) 16억 5,870만원 신규계상 (국)

-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2억 7,279만원 감액 (국, 도)
- 사회복지시설 월동용김장비 529만 9천원 감액 (기)
-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부담금 2,828만 7천원 증액

- 노인복지시설 운영 4,502만원 증액 (국, 도)
- 노인복지시설 수용보호 3,635만 2천원 감액 (국, 도)
- 저소득노인 지원 3억 3,789만 8천원 감액 (국)

-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,026만 7천원 감액 (국, 도)
- 아동복지시설 보호비 9,596만 6천원 감액 (국, 도)

- 아동건전육성 808만 6천원 증액 (국, 도)
- 입양아 보호 224만원 감액 (국)
-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 2,067만 6천원 감액 (국, 도)

- 보육시설 운영 4억 4,805만 7천원 증액 (국, 도)
- 보육시설 기능보강 140만원 증액 (국, 도)

- 노인교통수당 738만 6천원 증액 (도)
-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대우수당 336만원 증액 (도)

- 시설아동 전세금 1,125만원 감액 (기, 도)
-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00만원 감액 (도)

나. 특별회계

□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

307억 8,083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.5%인 1억 4,528만 1천원이 증액되었음

□ 세입의 주요내역은

국비보조금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금 증액 등으로

- 의료보호사업 도비부담금 (20%) 2,828만 7천원 증액 (도)
- 시군결산 반환금 384만 8천원 증액
- 의료보호사업 국고보조금 (80%) 1억 1,314만 6천원 증액 (국)

□ 세출의 주요내역은

국비보조금과 도비부담금 증액분과 예비비 감액분을 의료보호 진료비로 증액 계상한 것으로

-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수수료 100만원 증액 (국, 도)
- 시군 의료보호진료비 3억 4,043만 3천원 증액 (국, 도)
- 예비비 1억 9,615만 2천원 감액

檢 討 意 見

◆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
추가경정예산안은

국비보조사업의 사업량 변동에 따른 국비와 이에따른 도비부담금을
증감 조정한 것으로 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됨

◆ 다만 다음과 같이 전액 감액되거나 신규계상된 사업, 그리고 증감
폭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설명과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

-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29억 6,550만원 전액 감액 (국, 교)
- 건강증진 사업비 (성립전) 2,320만원 신규계상 (기)
-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사업 (성립전) 19억 900만원 증액 (국)
- 하수종말처리장사업 (성립전) 68억 7,200만원 증액 (양)
- 재가복지센터 장비구입 1,500만원 신규계상 (기)
- 사회복지시설 월동대책비 (성립전) 3억 258만 9천원 증액 (국, 도)
-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3억 7,494만 9천원 증액 (국, 도)
-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생계비 (성립전) 16억 5,870만원 신규계상 (국)
- 보육시설 운영 4억 4,805만 7천원 증액 (국, 도)